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23.9.22.시행)으로 종합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작성) 및 조사보고서(연 2회 작성) 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명확해짐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관리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2.27.)에 따른 체계적 보상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단이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5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2.27.시행)에 따라 보상 신청·접수를 재개(신청·접수기한: '23.7.~12.)중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나. 권고사항 이행관리·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안 제6조)

-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6조제1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권고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6조제2항)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3항)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7조)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의2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조문 삭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①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②이행상황 및 결과
제출, ③권고 미이행 시 그 사유를 통보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을 “폐지·종료”로 한다.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 연도말부터 30일
이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단) ① 위원회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지원단)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재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4. 폐지·종료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접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권고의 처리방향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다. 다만, 권고가 기존의 권고와 유사하며 반복적이고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 연도말부터 30일 이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권고의 처리방향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⑤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다.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관중 앙행정기관의 의무 등) ① 제6 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 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 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원회에서 의결된 이행계획에 대 하여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 에 이행상황 및 결과를 위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 또는 통보한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 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7